

서면심리통지서

문서번호	제 호	
이의신청 번호		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영업소)	
신청 취지		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98조제1항 및 「행정심판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귀하(귀 법인)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(지방자치단체)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